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12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 송언석 · 이종욱 · 이인선

이종배 • 구자근 • 김태호

최은석 • 박수영 • 박준태

김상훈 · 신성범 · 김석기

임이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정하고 있음. 그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임.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배정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총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등 필연적으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게 됨.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경

우 사업이 지연되면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한 인 건비가 증가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을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9조 중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계약기간의 변경(제21조제3항에 따른 총계약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총계약기간을 약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총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총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1.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따라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신청절차 등 총계약기간 연장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금액 조정)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 약 · 제조계약 · 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제21조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 제3항에 따른 총계약기간 연장 을 포함한다),-----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생략)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 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 는 경우 총계약기간을 약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가 총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총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1.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따라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신청절차 등 총계약기간 연장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